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행정/노무	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외에 전화,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기업송무	②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 간 자율적인 계약은 보장하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
국회 계류안	행정/노무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신설,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력을 확보하도록 함.
공포 법령	조세	④ 관세법 시행규칙	해외 여행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휴대품의 기본면세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
입법/행정예고	행정/노무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 보험료 지원 요건에서 사업장 기준을 폐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함.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p>노웅래 (더불어민주당)</p>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가 증가함. 평일 오후 늦은 시각 또는 주말·공휴일 업무 연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근무시간 외 반복적, 지속적인 업무지시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선을 허물어 사실상 근무시간 연장이나 다름없는 상황임. 휴식의 리듬을 깰 정도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시간을 따로 들여 답해야 할 연락이 왔다면 초과근무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p>이에 사용자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SNS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근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p> <p>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U2V0I9X0C8P0R9K2G1R4Y6S2W3K7</p>	<p>한국경제 22.09.11. "퇴근하고 좀 쉬자"...벌금 500만원 '업무 카톡 금지법' 발의</p> <p>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091138807</p>	22.09.08.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p>윤영찬 (더불어민주당)</p>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고 있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등). <p>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Y2V0A8U2S3Z1I6J0O6O5C9Y7P8Q5</p>	<p>아시아경제 22.09.08. 망 사용료 논의 속도…윤영찬 의원,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p> <p>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90814384079627</p>	22.09.08. 제안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p>양경숙 (더불어민주당)</p>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의 재산적 손해로부터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민사상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단체교섭과 쟁의행위가 법령상 요건을 준수한 정당한 행위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민사상 면책의 인정 범위가 협소하여, 단체교섭·쟁의행위 외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인정됨. 또한,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음. 또한, 사용자의 손해 산정 시 기회비용으로서 영업손실,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까지 포괄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존립 또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이 청구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사항은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용자를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보고, 노동조합의 교섭당사자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파견·하도급 등의 계약 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과 관계없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신설하는 한편,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력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함(안 제2조제2호 단서 신설). 나.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상 면책 대상을 노동조합의 활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영업손실 및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3항). 	<p>파이낸셜뉴스 22.09.12. '노조에 파업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이달 국회 문턱 넘나 [내외외환에 속타는 재계]</p> <p>https://www.fnnews.com/news/202209121838083664</p>	<p>22.09.01. 제안</p> <p>22.09.02. 소관위 회부</p>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p>다.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동반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른 경우 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을 제한함(안 제3조제2항·제4항).</p> <p>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p> <p>마. 노동조합이 손해를 입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사업 규모, 종속근로자의 수 등을 함께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p> <p>바. 근로자의 정의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서 소극적인 근로 제공의 거부에 해당할 경우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함(제4조제1항 단서).</p>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N2A0W8K1B8J1Q1B5Z2B5M9H8V0W9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p>■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자가 수입할 수 있는 휴대품·별송품의 면세 한도를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상향하고, 별도 한도가 적용되는 술의 면세 한도를 1병에서 2병으로, 합산 용량은 1리터에서 2리터로 늘리며, 입국장 보세판매장의 판매한도를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하는 한편,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출처: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시행규칙</p>	<p>매일경제 22.09.05.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일부터 800달러로 인상</p> <p>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9/787137/</p>	<p>22.09.06. 일부개정</p> <p>22.09.06. 시행</p>

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노무제공자 월별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액”으로 변경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시 재인가 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 및 보험사무대행기관 재인가 제한기간을 차등 설정하고,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는 “월 보수액”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 세부사항 규정(안 제56조의7제3항~제5항)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며 피보험자격 관리 및 월보험료 납부를 기한내에 이행한 경우 등에 대해서 지원하며 신청 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나. 보험사무대행기관 재인가 제한기간 설정(안 제48조제1항·제2항) 재인가 제한기간은 자진 폐지 및 인가 취소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 설정하고, 대행기관이 인가취소 회피 목적으로 자진폐지 신고한 경우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됨이 확인되면 인가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예술인·노무제공자 두루누리 지원요건 완화(안 제28조제3항) 예술인·노무제공자의 현행 두루누리 지원 요건 중 사업규모 제외,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도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관련 조문 정비(안 제19조의3, 제56조의6 등) 월평균보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한 조문(제19조의3)에서 노무제공자는 삭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규정(제56조의6)에 월 보수액의 신고 시기, 월별보험료 산정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 	<p>한겨레 22.09.07. 10인 이상 사업장 예술인·특고·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료 지원</p> <p>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57894.html</p>	22.09.07. ~ 22.10.17.

출처:<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9848?pageIndex=1>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경향신문][기사] 녹슬고 금간 안전...중대재해 10건 중 7건은 '노후 산단'서 발생(2022.09.13.)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9132057005>

주요내용 유해 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석유화학단지에서는 화재와 폭발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노동자들은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으로 낡은 설비를 지목함.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의 가공연도를 보면 울산산업단지는 1962년, 전남 여수산업단지 1967년, 충남 대산산업단지는 1988년임.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5월)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할하는 64개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중 약 70%가 4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일어남.

[서울신문][기사] '시행 8개월' 중대재해처벌법 짚어보니...처벌 아닌 예방 집중해야 (2022.09.1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08500146&wlog_tag3=naver

주요내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안착시켜 사고사망 만인율을 OECD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10월 중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후적인 처벌법이 아니라 재해를 예방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기업들이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처벌 피하기에 집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비롯한 실질적인 경제벌 부과로 제재의 실효성과 즉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 다만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방치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뉴시스][기사] "지하철 사고 함께 막아요"...시민신고 덕 중대재해 10건 (2022.09.08.)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08_0002007406&clD=10201&plD=10200

주요내용 서울교통공사는 4월부터 운영해온 시민참여형 중대재해 신고 시스템인 '중대재해 시민신고 채널'의 성과가 있다고 밝힘. '중대재해 시민신고 채널'은 지하철 이용 시 위험 요소를 간편히 신고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도이며, 지하철 이용 중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누구나 역별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사 고객센터 전화 등으로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음. 채널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역 직원을 비롯한 공사 직원이 내용 파악 후 신속히 관련 부서에 대응을 요청하고, 이를 사내 시스템에 등록해 조치 이력을 관리함. 또한, 공사는 작년 종합안전관리대책 수립에 이어 올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간부급 이상 직원을 안전매니저로 지정해 지하철 내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발굴·조치하며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함.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박민재
공동센터장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17
E : parkmj@draju.com



최원혁
변호사

T : 02-3016-8737
E : whchoi@draju.com



권기원
공동센터장

T : 02-3016-8743
E : gwkwon@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행정/노무팀



이승택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91
E : stlee@draju.com

기업송무그룹



김수형
파트너변호사

T : 02-563-2900
E : shkim@draju.com

조세그룹



이규철
대표변호사

T : 02-3016-5335
E : kclee@draju.com

중대재해자문그룹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2@draju.com